국 제 표 준 화 회 의 참 가 보 고

제3차 APT PP-06 준비회의

서 정 숙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주무관

신 수 경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제정보격차해소협력단 대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권위원회(PP: Plenipotentiary Conference)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TU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ITU의 헌장·협약 개정, 향후 4년간 전략 및 재정계획 수립, 이사국 및 선출직 간부 선거 등이 이루어진다.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17차 ITU 전권위원회를 위해 APT는 2회의 준비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회의를 통해 전권위원회에 제출할 아·태 지역 공동 기고서가 마련되었다

1. 서론

2006년도 ITU 전권위원회를 위한 제3차 APT 준비회의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는 APT 24개국 회원국, 8개 회원사, 2개 국제기구대표 등 총 117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전파연구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관련 전문가 총 10명이 참가하여 ITU 재정과전략의 기본방향 및 전파,표준,개발부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ITU 이사국 재선 및한국 선출직 후보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전권위원회를 대비한 선거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번 준비회의를 통해서 총 19개의 APT 공동 기고서 (안)이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제출한 WSIS 결과이행과 연계된 ITU의 역할제시, ITU 직원의 지역 및 성별의 공정 한 분배, RRB 기능의 효율성과 효과향상, RRB 회의횟수조정, Telecommunication 개념의 변경 및 ITU 역할 확대, ITR 개정/폐지 반대에 대한 기고서가 APT 공동 기고서(안)에 반영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공동 기고서(안)에 대해서 APT 회원국은 7월 31일까지 검토한 후, 최종 찬성여부를 APT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최종 투표결과에 따라APT 공동 기고서로 확정된 후 ITU PP-06에 제출하게 된다.

회의는 5개의 작업반(CG: Correspondence Group)을 구성한 후, 각 작업반을 통해 주요이슈를 논의하고 기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본회의(Plenary)에서 최종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작업반별 주요 이슈에 대한 APT 입장 및 개발된 공동 기고서(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하다

2.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 CG1(예산, 조직 및 전반적 활동 분야)

기부금(Contribution)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기부금 최종단위(class of contribution) 공지를 전권위원회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APT 회원국은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서(안)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는 ITU 직원의 지역 및 성별 분배에 대해, 특히 고위직의 경우 아시아인이 타 지역 비해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필리핀, 호주 등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결의 48(인적 자원 관리 및 개발)에 우리나라의 제안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작성하여 공동 기고서(안)으로 제출하였다.

□ CG2(전략 분야)

금년 이사회에서는 정보사회정상회의(WSIS)¹⁾ 이후 ITU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전권위원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WSIS 결과 수행을 위한 ITU의 조정기능 강화에 대한 기고서를, 일본은 WSIS 이후의 ITU의 역할에 대한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두 기고서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ITU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중국, 이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 CEPT 기고서의 내용을 차용하여 공동기고서(안)이 작성되었다.

ITU의 역할변화와 함께 ITU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ITU의 명칭변경 문제이다. 러시아, 아랍 그룹이 이미 ITU 의 명칭을 각각 infocommunication과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union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APT 회원국들은 유럽지역과 함께 ITU 명칭 변경에 반대하기로 합의하여 본 내용을 공동 기고서(안)으로 작성하였다. 단, ITU의 역할, 및 telecommunication의 개념 정의에 대한 APT 공동입장을 이 시점에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옵서버에 대해서는 이사회 작업반의 권고를 지지하며, 이사회를 계속 웹캐스팅할 것과, 현재의 옵서버 지명절차와 참석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PP(2010년)까지 유지하기로 동 의하고 공동 기고서(안)을 작성하였다.

이번 전권위원회가 4주에서 3주로 줄어듦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졌다. APT 회원국은 선거를 회의 시작 후 9일 후 대신 4일 후 시작하자는 유럽지역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와관련된 GR172의 개정을 지지하는 공동 기고서(안)이 작성되었다.

ITU 선출직 임원에 대해 타 유엔 기구에 비해 선출직 임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무총장과 차장만 PP에서 선출하고 국장은 지명직으로 바꾸자고 한 유럽지역의 제안에 대해서는 APT 회원국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기고서(안)을 개발하고 ITU 제출여부는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싱가폴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원칙과 ITU의 역할을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결과 및 다른 지역의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고서(안)을 개발하되 ITU 제출여부는 회원국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¹⁾ 전반적인 정보사회 발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공통 비전을 추구하고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정보격차 해소에 협력하기 위해 UN과 ITU가 마련한 세계정상회의(http://www.itu.int/wsis/)

□ CG3(전기통신표준화 분야)

무료 온라인 ITU-T 권고 이용에 대해 제2차 APT 준비회의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APT 공동기고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번 ITU 이사회에서 시범적으로 ITU-T 권고의무료 접근을 허용하고 시험운용 결과를 2007년 이사회에보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결정하였다.

또한 호주가 제 2차 준비회의에 이어 금번 회의에서도 제안한 TSAG의 SG간 표준화 활동의 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현 PP 결의 122를 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APT가 그 필요성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동 사항을 APT 공동 기고서(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표준화 격차해소(결의 123 개정)에 대한 APT 공동 기고 서(안)을 개발키로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ITU가 동 사 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 며,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홍보 및 회원국(사)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포함되었다.

매번 전권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규칙 (ITR)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ITR의 폐지여부 및 WCIT 개최여부는 PP-10 이후에 결정하고, 우선적으로 규정에 대한 연구를 ITU-T에서 선행하고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ITU-T 권고로 대체하거나, 국가간 조약 또는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은 ITU 헌장 또는 협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공동기고서(안)을 마련하였다.

□ CG4(전파통신 분야)

PP 결의 85(위성망의 행정적 이행절차를 평가)²¹ 및 PP 결의 87(주관청들을 대표하여 위성망을 등록시 대표 주관청 의 역할)³⁾을 삭제하는데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공동 기고서 (안)으로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PP 결의 86(위성망 국제등록 절차의 간소화)은 국제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비정지 위성 시스템에 관한등록절차 간소화 방안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에 의견을 같이하여 결의86 개정안을 공동기고서(안)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파규칙위원회(RRB) 회의 기간 및 횟수와 관련한 ITU 협약 145는 수정하지 않고 결의 119에 RRB 회의를 매년 4년에서 3년으로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결의 개정안을 공동 기고서(안)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결의 119(전파규칙위원회 효율과 효과 증진방법)의 수정을 통해 RRB 회의결과에 따른 결정시 적절한 결정 배경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RRB 회의시 현행 ITU 이사회와 유사하게 webcasting을 하도록 공동기고서(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란이 제안한 전파규칙에 관해 이의가 있는 주관청이 RRB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추가 설명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호주 등이 반대하여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외 유럽지역(CEPT)이 제출한 결의 삭제에 대해서는 검토 후 APT common view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ITU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CG5(전기통신개발 분야)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통신서비스는 재난발생시 주변국이 의무적으로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Tampere Convention이 통신서비스 지원과 각국의 협약비준을 촉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ITU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하도록 결의 36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Tampere Convention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공동기고서

²⁾ 결의 85는 현행 RR(전파규칙) 상의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관련으로 결의 49(Rev. WRC-03) 및 결의 86(Rev. 마라케시, 2002)에 이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것 제안

³⁾ PP 결의 87은 현행 RR(9,11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것 제안

(안)에 대해서는 voting 시 반대입장을 취하기로 하였다.

개도국의 NGN 보급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기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한국, 이란, 중국 등은 NGN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고 WTDC 결의에 개도국 NGN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ITU-D 연구의제(Q12)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개도국에 있어 NGN이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PP-06에 신규 결의(안)을 APT 공동 기고서(안)으로 작성, 제출하기로 하였다.

BDT의 다른 부문 및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ITU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를 증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란은 이것이 PP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WTDC에서 논의되어 야 할 BDT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으나, 한국, 인도 등이 지역 사무소 강화는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PP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결의 25개정(안)을 공동 기고서(안) 으로 작성,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럽지역이 World Telecom과 Regional Telecom을 통합하여 1년에 한번만 개최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싱가폴이 지지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 일본, 뉴질랜드 등이 Telecom 전시의 행사 주관방식을 변경할 필요에는 동감하나 행사의 통합이나, 개최시기의 조정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공동기고서(안)으로 개발하고 향후 APT 회원국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ITU 제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ITU 전권위원회를 위한 APT 공동 기고서(안)⁴⁾〉

1	Telecommunications in the service of humanitarian assistance(결의 36 개정)
2	Implementation of WSIS outcomes(신규 결의)
3	Considering the name of the ITU
4	Role of observes at Council
5	Method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RRB(결의 119 개정)
6	ITU-R related Resolutions of the previous PPs (결의 85, 87 삭제, 86 개정)
7	Strengthening the regional presence(결의 25 개정)
8	Announcement of the definitive choice of class of Contribution
9	Early commencement of the election at PP-06
10	Corrective measures regarding the cost recovery for satellite network filings
11	NGN de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신규 결의)
12	Role of the ITU in the development of world telecommunications/ICTs infrastructure toward the building of information Society(결의 24 개정)
13	The evolving role of the WTSA(결의 122 개정)
14	Bridging the standardization gap between the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결의 123 개정)
15	Resolution on ITRs(신규 결의)
16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development(결의 48 개정)
17	Role of ITU in the Internet Governance Issues
18	Official to be elected at the PP
19	ITU Telecom Regional and World Exhibitions and Forms

⁴⁾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아ㆍ태지역 공동 기고서(안)은 회원국 찬ㆍ반 투표결과에 따라 전체 APT 회원국의 25%(9개국)이 찬성할 경우 최종 공동 기고서로 확정되어 ITU PP-06에 제출하게 됨.

3. 결론

오는 11월 열리는 제17차 ITU 전권위원회는 ITU의 향후 4년간 재정, 전략 및 발전방향 등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이다. 한국은 ITU 이사국으로써 우리나라 뿐 아니라 ITU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APT PP-06 준비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작업반(CG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종봉 선 임연구원)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아· 태지역 정보통신 선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금번 ITU 전권위원회에서 실시될 ITU 이사국 및 선출직 간부 선거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ITU 이사국 5선 진출과 우리나라가 후보를 낸 전기통신표준화 국장 (TSB) 선출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의 협력과 지지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준비회의에서 작성된 공동기고서(안)은 7월 31까지 회람될 예정이며, APT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APT 공동기고서로의 확정여부를 결정한 후 2006년 ITU 전권위원회에 APT 공동기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TTA**